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. 12. 11 선고 2020가단19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대리인 장규석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가람

담당변호사 안병규, 최원준, 정영훈

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일

변론 종결 2020. 11. 13

판결 선고 2020. 12. 11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

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원고가 2019. 4. 3. 피고와 사이에 'C산업단지 지원 D, 1,455㎡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, 피고에게 총 분양대금 1,845,000,000원 중 계약금 및 3차 중도금까지의 합계 1,660,000,000원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할 때, 이 사건 토지 북측에 왕복 6차선 도로가 개설 되어 위 토지와 인접하는 것을 전제로 분양대금이 산정된 것이다.

그러나 당초 계획되 었던 왕복 6차선 도로의 개설계획이 취소되었으므로, 위 분양대금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보아야 한다.

따라서 초과납부된 분양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이 위 토지 북측 에 왕복 6차선 도로가 개설될 것을 전제로 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전선주